

유럽공동체(EU) 국가들의 설계공모제도와 독일연방국 전(前)수도 「본(Bonn)」시의 ‘교육의 집’ 공모 수상 심의위원회 수상결정 회의 참관기④

Architectural Competitions in the EU-States & Experiencing the Jury session for the "House of Education" in the City of Bonn/Germany

이선구 / 송실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by Prof. Dr. Lee, Sunkoo
Soongsil University, Seoul/Korea

건축설계 공모 개선 방안으로 한국건축가협회는

-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검증된 건축사들이 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심사위원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사전 공개한다.
- 평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1인 1표 방식과 토론을 거친 단계 별 과정을 통하여 평가한다.
- 공모 규모에 따른 제출물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 보상비를 지급한다.
- 설계 공모 심사후 출품작들을 공개 전시 한다.
-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의무화한다.
- 고 절규(絶叫) 하고 있다.¹⁾

그간 대한건축사협회의 기관지 '건축사' 지의 연재물 '유럽공동체(EU)국가들의 설계 공모제도와 독일연방국 전(前)수도 '본(Bonn)'시의 '교육의 집' 공모 수상심의위원회 수상결정 회의의 참관기' ²⁾를 읽은 독자들은 위의 절규에 대한 '모범 해답' 이 이미 '회

의 참관기' 속에 제시 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전문 심사위원

「본」시 '교육의 집' 시상 심사위원 13인들 중 7인(과반수)은 모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검증된' 전문 심사위원들이다.

7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은 실무를 수행중인 건축사이고, 5인은 건축사 자격을 갖춘 주업(主業)이 교수인 해당분야 전문가들이다.

심사위원 명단 사전 공개

심사위원의 사전공개 역시 명쾌하게 제시 되고 있다.

'교육의 집' 설계공모공 시 발송일은 2008. 4. 22일이며 이날 공모주관 부서인 「본(Bonn)」시 건물관리청은 공모 참가자 모두에

1) 2009.7.29 한국건축가협회를 대표한 김홍수 위원의 '대통령 소속 국가 건축 정책위원회'의 발언 및 기고

2) 건축사 482, 483, 484 pp.77-80, 80-85, 84-90

게 공모 심의위원회 위원들 - 심사위원, 부(副)심사위원 및 (표결된 없는 해당분야) 전문가 - 의 명단을 공모공시 문서에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의 설계공모의 경우, '로비행위의 우려'로 심지어 심사당일 새벽에 예측되는 개별 심사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는 공모 참가자(응모자)들의 '예측되는 심사위원들의 사전관리'와 일부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인한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³⁾

'교육의 집' 공모의 경우 공모문서 '제 1장 공모절차'의 '1. 11 심사위원회'항은 13인의 심사위원과 9인의 부(副)심사위원의 명단, 지역, 자치단체 소속 정치인의 경우 소속정당이 제시되었고, 예비 검토자인 위탁업체의 이름 또한 제시 되고 있다.

공모작품 제출 마감일(2008.9.15)보다 무려 5개월 전인 공모공시 발송일(2008.4.22)에 심사위원을 비롯한 공모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밝혀진 '교육의 집'을 비롯한 독일 연방국의 설계 공모의 경우, 공모 응모자들의 로비행위로 인한 잡음은 알려진바 없다.

공모 공시시 이미 이름이 밝혀진 이들 심사위원을 비롯한 인물들은 과연 로비행위에 무감각한 천사들인가?

'참가기'의 '공모 사상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들은 이들이 공정함심의과정을 보장하는 도구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모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심사위의 개최일 까지 개별 공모출품작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아는 바 없으며, 응모자들과 과업에 관한 하등의 의견 교환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천명하다.'

공모과정 참가자(표결권 있는 사상 심의위원 13인, 부 심사위원 8인, 내, 외부 사안 전문가 6인, 예비검토자 9인(시 행정부서, 비용/기술 검토, 조절) 모두가 서명행위를 통하여 2008.10.17 회의록 말미에 서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카니즘」이다.

서양인들에게 서명행위는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보다 더한 보증서는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익명의 심사위원회'에 숨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인 것이다.⁴⁾

만약 서명을 통하여 공정한 심사를 천명한 인사가 나중에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알려진다면 - 대개의 부당한 행위는 알려지게 마련이며 - 이들은 업계에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게 될 것이며, 아무도 이러한 큰 모험을 감수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다.

평가 방법과 절차

'교육의 집' 공모 사상심의 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이, 심의위원들은 평가 순회시에 개별 응모 작품들 앞에서 토론하며, 매 심의위원들은 7개

의 결선작품들에 대하여 서면(書面)판단을 실시하며, 이들 서면 판단들은 해당 전시 도면 앞에서 낭독되고, 토론되고 재가(裁可)되었다.

4개의 수상작과 3개의 매입작 7작품의 평가는 공모의 문서화(Dokumentation)에 포함되어 작품 관람시에 전시됨은 물론이고 추후 참고자료로서 남게 된다.

공모시 제출물 기준은 공모 공시문서 제2장 (연재 3회 '공모절차를 위한 제반서류' 참고)에 도면의 축척과 크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의 집'의 경우, 초대공모에 한하여 작품 제작비가 보상되므로, 공모공시 문서 '1.14 상급 및 매입'항에 상급 액수를 명시하였고, 이번 공모 (유럽공동체 전역에 걸친 공개공모)에 작품 제작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설계공모 응모 작품들의 공개전시

공모공고문서 1.17항 '공모결과 고시 및 공람'항은 '모든 판단에 허가된 공모출품작들은 (제작자)이름 제시하에 14일간 공중에 전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모 출품작의 전시여부는 처음부터 명백하게 천명되어 추후 전시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배제하고 있다.

위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우리 건축계가 이처럼 갈구(渴求)하는 그 투명성이 근저에 놓인 합리적인 설계 공모제도에 관한 해결책은, 「본」시 '교육의 집' 공모 과정 세부 조명을 통하여 충분히 밝혀졌을 것이다.

우리의 설계공모제도 합리화에 관한 고민을 일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시 교육의 집 공모과정을 가능케한 도구는 바로 독일 연방국의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에서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GRW1995 - 2003.12.23수정)이 있기 때문이다.

운영지침: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에서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GRW1995 - 2003.12.23수정)'

독일 연방정부 교통, 건설 및 주택성 장관 「만프렛 시를페」박사는 2003.12.22일 위 원칙과 기준 신판(新版)공포에 즈음하여, 오랜 설계 공모전통 (최초의 공모 규칙의 도입은 1867년)을 배경으로 '독일 연방국의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에서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은 설계공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평하며 동반자적 협력과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및 기술적 목표들을 추구하여 독일연방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고자 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설계공모제도 개선에 타산지석 또는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설계공모 운영 지침인 '원칙과 기준'의 골격은 아래와 같다.

3) 김홍수, 위 발언 및 "파주시 발주공사 입찰심사 교수: 건설사가 1,000만원 상품권 했다", 중앙일보09/8/5, p.22
서현, "교수, 건축의 적인가", 건축, 0801, pp.66~67

4) 김홍수, 위 글을참고

[전문]

- | | |
|---|--|
| 1. 원칙 | 5.1.4 공모 제과업/5.1.5 판단 제기준/5.1.6 공모 서류에 대한 수수료 (서류 보호 수수료) |
| 1.1 공모의 대상 | 5.2 공모참가자 선언 |
| 1.2 목적 및 목표 | 5.3 질의 응답(콜로퀴움) |
| 1.3 시상 및 (작품)매입의 공고 | 5.3.1 질의응답/5.3.2 콜로퀴움 |
| 1.4 과업관계 | 5.4 공모 작품들의 형식적 처리 |
| 1.5 기화균등 | 5.4.1 작품표시/5.4.2 제출 |
| 1.6 익명성 | 5.5 예비검토 |
| 2. 공모의 종류 | 5.6 시상심의위 회의 |
| 2.1 공모목표 | 5.6.1 비공개원칙/5.6.2 시상심의위 진행과정/5.6.3 시상심의위의 구성/5.6.4 공모작품들의 허가/5.6.5 작품평가-결선(決選)/5.6.6 특별상 수여/5.6.7 시상 판정/5.6.8 (작품)매입 판정/5.6.9 시상심의위의 추천사항들/5.6.10 (작품)보완 단계/5.6.11 시상심의위 회의록 |
| 2.1.1 아이디어 공모/2.1.2 실현공모 | 5.7 공모작품들의 단계적 검토 |
| 2.2 공모의 제 단계 | 6. 공모 종결 |
| 2.3 공개공모 | 6.1 결과 공시 |
| 2.3.1 허용범의/2.3.2 두 단계의 공모 | 6.2 참가자격 및 (공모)과정의 검토 |
| 2.4 한정공모 | 6.3 공모작품 전시 |
| 2.4.1 원칙/2.4.2 한정 공개공모/2.4.3 초대 공모/2.4.4 협력적 절차 | 6.4 소유권, (작품)반송 |
| 2.5 간소화된 절차 | 6.5 보증책임 |
| 3. 공모 참가자 | 7. 공모로부터의 결과 |
| 3.1 공모 주관자 | 7.1 계속작업 |
| 3.2 공모참가자 | 7.2 계속작업에 대한 보상 |
| 3.2.1 법적 형태와 대항권한/3.2.2 참가자격/3.2.3 참가 비(非)자격/3.2.4 초대공모시 참가(의사)표시 | 7.3 저작권 |
| 3.3 시상심의위원회 | 7.3.1 계속작업시 작품의 사용/7.3.2 계속작업 없을시 작품의 사용 /7.3.3 최초의 출판 |
| 3.4 시상심의위원, 전문가 및 예비검토자 | 8. 시상심의위원의 경비보상과 전문가와 예비 검토자의 보상 |
| 3.4.1 임명/3.4.2 시상심의 위원/3.4.3 전문가/3.4.4 예비검토자 | 8.1 시상심의위원 |
| 3.5 공모위원회 | 8.2 시상심의위원 대리인 |
| 4. 포상(褒賞) 및 (작품)매입, 제작비 수가 | 8.3 전문가와 예비검토자 |
| 4.1 공모총액 | 8.4 제비용 보상 |
| 4.2 공모총액의 분배 | 9. 종결 제규정 |
| 4.3 포상 등급두기 | 9.1 예외규정 |
| 4.4 제박비 수가 | 9.2 발효일자 |
| 4.5 다단계 공모 | |
| 5. 공모 절차 | |
| 5.1 공모 공고 | |
| 5.1.1 고시(告示)/5.1.2 공모공고 내용/5.1.3 여타 공모내용 제서류 | |

- 부록 I : 공모공고시 필수적 사항목록
- 부록 II : 예비 검토의 일반적 진행절차
- 부록 III : 시상심의위의 일반적 진행절차
- 부록 IV : 합병 공모와 투자자공모의 특별절차

발췌 :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분야에서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 (GRW 1995, 2003.12.23 수정)

설계공모의 종류

설계공모의 목표에 따라 아이디어공모와 실현공모로 분류할 수 있다.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공모에서는, 과제 실현의도 없이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추구되는데, 실현을 위한 공모 준비 또는 제한된 공모 참가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한다.

실현공모

실현 공모는 확정된 프로그램과 성취 요구사항들의 기초 위에 하나의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계획적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초대 공모

요구되는 개괄적 작업의 깊이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형편에 맞는 경우, 초대 공모가 실행된다. 초대 공모의 경우 참가자의 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이어야 하며, 허용된 참가자의 이름은 공모문서 발송 시에 매(每) 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가자의 전문가적 적성을 검토키 위하여 적어도 2인의 독립적이며 시상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참여자들로부터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속하는 선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은 공모 공고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문의시 보일 수 있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협력적 절차

공모자, 시상 심판자, 공모 참여자간의 공모과제와 가능한 해결책에 관한 의견교환이 일어날 경우 협력적 절차로서 공모되며, 모든 참가자들은 동등한 정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의견교환은 대담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공모자는 공모과제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은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심사위원회에 중간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의 수는 홀수이어야 하며, 공모 과제의 규모에 따라 7~11인이어야 한다.

공모자 측은 전문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위원회와 공모자를 항시 연결할 수 있는 접촉 심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수가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2인의 독립적인 전문가이어야 한다.

심사위원

대상물 전문 심사위원은 지역 형편과 공모 전 과제에 특별히 친숙해야 한다. 과목 전문 심사위원은 이들의 직업상의 자질로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적 요구사항들을 탁월하게 만족시켜야 한다.

전문가

전문가는 전문분야의 공인된 인물로서 공모 준비와 예비심사에 공모자와 심사위원회를 자문해야 한다.

공모위원회

건축가 회의소와 엔지니어 회의소에 구성된 공모위원회는 공모준비와 실행에 자문적으로 동참한다.

자문은 특히 공모 종류, 요구된 성취, 참가 전제조건, 공모금액 및 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기한에 관여하여 행해진다. 해당 공모위원회는 공고문서, 질의 응답과 대담과 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모절차

공모공고

공모공고는 아래의 목록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공모공고 이전에 청취되어야 한다.

1. 위탁자와 관계문서를 득할 수 있는 관청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프로젝트 기술
3. 공모의 종류
4. 공개 공모인 경우: 공모작품 도착 시한과 문서보호 수수료 책정
5. 제한공모인 경우
 - 의도된 참가자의 수
 - 경우에 따라 이미 선발된 참가자 명단
 - 참가자 선발 기준
 - 참가신청서 도착기한
 - 초청공모인 경우: 선발위원회의 구성
 - 공모 작품 제출 기한
 - 협력적 과정인 경우: 공모 프로그램을 참가자 전부와 함께 의견교환을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사
6. 경우에 따라 특수한 직업의 참여에 대한 유보(留保)

7. 적용될 판단기준

8. 이미 선발된 심사위원의 명단
9. 심사위원회 결정에 공모자의 관련 종류와 규모, 실현공모의 경우 :
계속 위임의 규모
10. 상금과 작품구입의 수와 금액
11. 경우에 따라 제작수수료 또는 여타 비용배상 요구(청구권)
12. 경우에 따라 계속 위임 고려에 관한 요구
13. 공모참가자가 공모 규정위반 주장 검토를 청원하는 장소 이름 및 주소

공모내용

공모과제는 모든 요구사항들을 포괄적이며 오해의 여지 없이 서술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모의 계기 및 목표
2. 공모자 표시
3. 공모의 대상과 종류
4. 허용범위
5. 공모과제 서술
6. 학제간 공모의 경우 요구된 전문적 기여
7. 공모의 경제적 테두리 여건
8. 참가 자격
9. 허가지역 외(外)로부터의 초대된 참가자의 이름, 초대공모인 경우 모든 참가자의 이름
10. 시상위원, 대행 심사위원, 예비심사자 및 전문가들의 사무소 주소
제시 하의 성명
11. 공모문서 보호수수료와 문서 반송기일
12. 제출기한, 공모작 표시의 방법 및 제출주소
13. 질의 응답 및 콜로퀴움 기일
14. 요구된 공모성취
15. 구속적인 예비사항 및 공모자의 고무사항
16. 시상위에 구속적인 판단기준
17. 상금, 매입 및 경우에 따라 작품 제작비 수와 금액
18. 이상의 공모 원칙들로 공모가 거행된다는 암시를 갖춘 공모조건
19. 공모 참가자의 선서 내용
20. 공모가 시행되거나 계속 계획 시 뒤따를 언어
21. 공모과제 해결을 위하여 결정적인 법적 근거 및 기술적 규정
22. 실현공모의 경우 수상자의 의도된 위탁 종류, 규모 및 일반 여건 및 수입료

콜로퀴움

1. 난이한 계획과제의 경우 공모자는 공모참가자들과 시상위원회 위원들과의 대담(콜로퀴움)을 개최하여 공모에 관한 추가정보 및 과제 설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한공모의 경우 이해관계자들과의 대담은 참가등록 기한 만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3. 대담 참가는 이해관계자들 또는 공모참가자들에게 참가 전제조건

으로 부과될 수 있다.

4. 대담은 통상 공모 진행 전반(前半)에 거행되어야 한다. 공모자가 심사위원회의 합의 하에 만들어진 참가자 대담 결과 회의록은 공모의 일부분으로서 공모참가자, 시상위원 및 심사자에게 송부 된다.

예비심사

1. 공모작품들의 심사와 요구사항들의 선별은 심사위원회 회의 까지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심사는 공모작품들이 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간적으로 늦게 도착한 작품들을 표시한다. 예비심사는 공모작들을 개봉하고 일련번호, 제출시간, 설계표시번호와 임의로 선택된 위장번호와 함께 집합리스트를 작성한다. 위장번호는 작품의 도착순서를 밝혀서는 안된다. 예비심사는 설계 표시번호를 위장번호로 덮고 시상위원회에 제시토록 전시한다.
2. 예비심사는 성취상 결손을 확인하고, 공모자가 확정한 구속적인 사항을 준수하였는지를 제시한다. 예비심사는 판단 기준과 평가의 틀의 기초 위에 예비심사의 결과가 기재될 검토리스트를 작성한다. 예비심사자는 예비심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만들어 시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예비심사는, 공모에 요구된 성취를 넘거나 공모자의 구속적인 조건에 저촉되는 표현들을 분리한다.
4. 시상위원회 개최까지 예비심사자는 시상위원이나 공모자 대표에게 개별 제출된 작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모작의 접근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5. 예비심사자는 시상위원회에 공모작품들의 근본적인 기능적 및 경제적인 특징을 밝히며 심사위원회가 간과(看過)할 위험이 있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

공모 시상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

시상위원회는 비공개로 개최된다. 시상위의 객관성이 보장되고 개별 시상위원이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특별한 인물의 입장(入場)이 공모에 허가될 수 있다.

시상위원회 회의의 흐름

공모자에 의한 시상위원회의 구성 이후 시상위원회는 공모작들의 허가에 관한 예비심사의 확인 고려하에 집합하여 허가된 작품들을 참가자에게 제시된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상(賞)의 인정 및 매입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상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아래와 같다.

1. 공모자에 의한 시상위원회 구성
 - 시상위원회 구성원 확인
 -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 보조원 참가 허가 등의 시상위원회 소속이 아닌 인물들의 출석권의 검토 및 회의 기록자의 결정

- 출석자 매인(每人)의 콜로퀴움 외에
 - 공모참가자와 공모과제 및 해결책에 관하여 어떤 의견 교환도 하지 않았다는,
 - 시상위원회 개최동안 이를 하지 않겠다는,
 - 예비심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시상위원회 개최시까지 공모작들에 관하여 여하한 정보도 획득하지 아니하였다는,
 - 비밀유지 하에 자문수행을 하겠다는,
 - 작품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 작품의 작가에 관한 추측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보증
- 공모과제 및 공모절차, 특히 판단기준 과 여타 구속적 사항들의 공모 및 질의와 대담 회의록에 준한 토의
- 시상위원의 객관적인, 오직 공모에만 방향을 정한 판단을 준수코자 하는 개인적 책임

2. 원칙자문

- 시상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 예비 심사보고 및 전문가의 예비심사 결과에 관한 입장 표시
- 예비심사를 통한 정보순회에서 모든 작품들의 상세하며, 가치판단 없는 설명
- 공모지역 또는 대지의 답사와 추가로 얻은 인지의 서면 확정

3. 공모작품 허가

- 예비심사보고
- 전문가의 입장표명
- 허가 결정

4. 허가된 작품평가

- 작품 수에 따른 공모 절차의 종류와 저자의 설명서 및 예비심사와 전문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첫 번째 순회에서 만장일치의 경우에만 배제 결의
- 서면 판결로서 결선에 채택된 공모작 결정
- 작품 순위 결정
- 상금, 구입 및 가능한 특별상 결정 및 계속작업 추천에 관한 결의 및 여타 문제(수정단계를 위한 추천 결의 등)
- 계속 작업에 관한 추천 및 여타 공모자 측으로부터 고려하여야 할 문제 등

5. 시상위원회 종결

- 서면 회의록 낭독 및 모든 심사위원들의 회의록 서명
- 작품저자 선언, 봉투 개봉, 저자 확인, 시상위 회의록 부록에 결과 확정
- 예비 심사위원 해촉
- 위원장을 공모자에게 위임
- 공모작품들의 공공전시 장소와 시간을 공시하는 공모자의 결언

6. 공모작품들의 전시

공모자는 가능한 한 늦어도 시상 1개월 후에 모든 제출된 작품들을 공공 전시하여야 한다. 공모작품들은 공모참가자의 이름, 법인인 경우 저자와 협력자들의 이름과 함께 가격, 매입추천과 결선 선발에의 진입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상위원회에 허가되지 않았거나 배제된 작품들은 표시하여야 하며 시상위원회의 회의록은 전시에 진열하여야 한다.

공모작품 평가 - 결선 투표구성

1. 첫 번째 평가순회에서 작품의 배제결의는 만장일치로만 수행될 수 있다. 다음부터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기권은 작품의 배제결의의 시 배제동의로, 여타 제의결의 시 거부로 간주된다.
2. 심사위원회는 허용된 작품들 중 어떤 것이 수상작인지, 구입 고려대상인지(결선대상)를 확정하고, 이 작품들을 서면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결선대상 작품은 설계공모 수상 및 구입작품 수의 1.5배이어야 한다.
3. 결선투표에 선택된 작품들의 순위는 매순위에 투표로서 결정되며, 제안된 작품 어느 것도 필요한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2개의 최다 득표작 중 결선투표로서 결정한다.

특별상의 인정

결선에서 순위가 결정된 후 심사위원회는 공모자의 구속적인 조건 위반으로 분리된 표현이나 공모작을 특별순회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히 괄목할 만한 자극을 부여하는 작품은 시상 및 구입 판정 이전에 특별상을 배려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설계시장의 경쟁논리와 설계공모', 이선구, 통일독일 현대건축, The New German Architecture Since Reunification, pp.183~200, 시그마프레스 2004
- 독일의 공공건축 : '베를린시 노이켈른구 '오토 한' 고등학교 설계 공모 공고부터 당선작 결정까지 전(全)과정의 세부조명', 이선구, 새 건축사협의회, 계간건축과사회, 2006/겨울, pp.70~90